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4. 11 선고 2017가단1949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3. 14

판결 선고 2018. 4. 1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2003. 10. 20. 접수 제71502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C은 2002. 12. 11. 소외 주식회사 한샘건설로부터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, 2003. 10. 20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9,5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등기'라 한다)를 경료하여 주었다.

나. C은 2008. 11. 27.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, 다음날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,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(1) 원고는, ① 2003. 11. 28. 원고의 계좌에서 15,000,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 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,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, 위 피담보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,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한 것이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(2) 먼저, 갑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. 11. 28. 자신의 계 좌에서 15,000,000원을 대체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,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한 근거가 없으므로(원고는, 원고의 모친인 소외 D이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묘에게 수표를 전달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영수증 등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,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. (3)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2003. 10. 20.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는 C에 대한 금 15,000,000원의 이 사 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는바,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02. 12. 11. 내지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경료된 2003. 10. 20.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.

이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, 위 피담보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

소멸하였고,근저당권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이를 지적한 원고의 위② 주장은 이유 있다.(4) 따라서,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 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항변 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,근저당권설정등기가 10년이 경과하면 등기효력이 소멸된다는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 내지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,피고의 위 항변 내지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홍성욱

별지